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,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(안 제43조의2 신설)

-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
- 사무배분 현황 조사와 이양사무 지원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조 및 관련 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) ① 법 제33조에 따른 권

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및 점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·

점검 및 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3조의2(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) ①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및 점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</u>

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·운영
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사무배분 현황
의 조사·점검 및 시스템 구축
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
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25